고정자산세・도시계획세 납세관리인 신고（승인신청）서

20　　년　　월　　일

　오사카시장

|  |  |
| --- | --- |
| 납세의무자 | 주소（법인인 경우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） |
| 후리가나성명인（법인인 경우 그 명칭또는 대표자의 성명인） |
|  | 전화번호（　　　　　）　　　　　　　－ |

신 고

승인을 신청

납세관리인에 대해서, 오사카시 시세조례제86조 제１항의 규정에 의해, 다음과 같이　　　　합니다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납세관리인 | 주소 또는거주（법인인 경우는,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） |  |
| 성명인（법인인 경우는,그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인） | 후리가나 |
|  |
| 전화번호 | （　　　　）　　　　－ |
| 납세관리인으로 정하는 이유（납세관리인이 시외에 주소, 거소, 사무소 또는 사업소을 가진 경우에만 기입） |  |
| 자산의 종류 | 토지　　　・　　　주택　　・　　　(감가)상각자산 |
| 자산이 소재하는 구 | 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구 |

주１　「신고」또는「승인을 신청」의 어느쪽인지 해당하는 곳에○로 표시해 주세요.

　　２　해당하는 자산의 종류를 ○로 표시해 주세요.